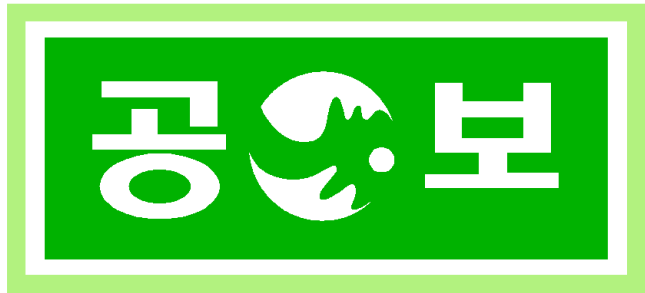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32 호 2013. 8. 5(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28호[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29호[도로명주소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3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696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05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공고]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12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28호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사단법인대중불교 조계종 천만사 대표 박승익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739번지						
점용위치	달천동 892-1, 달천동 892-136	하 천 명	상안천				
점용목적	○ PE이중벽관 D=400*12EA (L=24.2, B=3.5)	점용면적 (㎡)	구 분 지방하천	일시 영구	- 110㎡		
점용기간	○ 일 시 -						
	○ 영 구 2013. 8. 1. ~ 2018. 7. 31						
하천공사의 명칭	공작물 설치	하천공사 목적	종교시설(천만사)의 진출입로 설치공사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2013. 8. 1 ~ 2014. 6. 30			
공사위치	달천동 892-1, 달천동 892-136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지 번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달천동		892-1번지	천		98
			892-136	천	12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129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제내2길 10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8.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324-35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10(신전동)	2013-08-05	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280-6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3길 6-11(신전동)	2013-08-05	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84-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8(호계동)	2013-08-05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8-20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98 3-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18-1(진장동)	2013-08-0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읍신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221-22	울산광역시 북구 진상2길 9-11(신전동)	2013-08-05	예전 마을이름인 친새미, 한천(寒天), 냉정(冷正)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지번정정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218 2-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4길 8(진장동)	2013-08-0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읍신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지번정정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278 9L, 10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6길 20(진장동)	2013-08-0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읍신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지번정정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18 1L, 1-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40(진장동)	2013-08-05	진장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진장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8-02-29	지번정정
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48 6L, 7L, 9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3(진장동)	2013-08-0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읍신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지번정정
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58 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28(진장동)	2013-08-0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읍신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지번정정
1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28 9, 10, 11L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180(진장동)	2013-08-05	영포항개항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정정
12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73-1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인로 1862(신명동)	2013-08-05	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지번정정
1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5-4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15-1(호계동)	2013-08-05	기존 회암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리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지번정정
1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5-5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15(호계동)	2013-08-05	기존 회암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리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지번정정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13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석갯길 8-2외 9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8.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증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석간길 8-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89-2	2013-08-05	말소	
2	울산광역시 북구 가동길 24-3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393-3	2013-08-05	말소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길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B 17L	2013-08-05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34-48	2013-08-05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버덩길 66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626	2013-08-05	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20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40-21	2013-08-05	멸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5길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16	2013-08-05	멸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3길 8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4, 126	2013-08-05	멸실	
9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3길 148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98, 198-8	2013-08-05	멸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63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04-2, 796-11	2013-08-05	멸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3 - 6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1. 위탁운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보육 정원	비 고
		대지	건물		
숲속어린이집	양정1길 35-1 (양정동)	500㎡	301.82㎡	41	시간연장, 영아전담

2. 위탁운영기간 : 2013.11. 1 ~ 2018.10.31(5년간)**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가. 영유아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운영 조건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 ※ 위탁운영체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취약보육 중 2가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신청서류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3. 8. 5(월) ~ 2013. 8.20(화)(16일간)
 나. 접수기간 : 2013. 8.20(화) ~ 2013. 8.26(월)(7일간)
 ※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18시한 방문자에 한함

다. 설명회 개최

- 개 최 일 : 2013. 8. 14(수) 14:00,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설명회 불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단체 및 법인(개인)이 짐

라.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울산광역시북구청 4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6. 신청서류

가.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1권의 책자로 제본하고 페이지 표시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나. 제출 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13.8.5) 이후여야 함.

다. 사본서류에는 재산입증자료(10번~11번) 생략 가능

라.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 통 (신청자)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신청서식:별첨1. 참조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 신청서식:별첨2. 참조
	3.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4. 원장 자격증 사본	· 원본지참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등 -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등	·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 · 취약보육계획 2개이상 포함
	6. 주민등록등본	· 주소이력 포함
	7.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8.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9.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0.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등기부등본)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법인(법인명의), 단체(단체명의), 개인(부부)
	11.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 예금잔액증명서 : 정기에금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명서 등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단체(단체명의), 개인(부부)
12.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		
13. 단체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4. 어린이집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법인 및 단체	
해당자	15.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등)	· 원본지참

7. 위탁자 선정기준(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체의 재정능력(5)

8.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 가. 결정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함
- 나. 통 지 :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울산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10분/프리젠테이션 가능)하여야 하며 질의(10분)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자(포기자)로 간주함.
 -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원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기재된 원장)
-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 라.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바.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
- 아.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함.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보육담당) 052-241-7681 FAX 052-241-7669】

[별첨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심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납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번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범위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 [워빈용지 70g/m²(새활용종)]

[별첨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1. 법인및단체명칭(개인명) :

2. 소재지 (주소지) :

3. 설립목적 (보육이념) :

4. 대표자 기본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발급일)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5. 원장(예정자) 기본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발급일)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첨부 : 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6. 구성원 수 :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취임일자	연락처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개인일 경우 어린이집 교직원 구성 내용 기록

7. 위탁신청동기(취지)

8. 설립일자 및 연혁(많은 경우 별지 작성/개인일 경우 주요경력 작성)

년 월 일	내 용	비 고

9. 주요사업실적(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 핵심가치 공동기업, 법인 단체는 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 등 포함)

가. 사업실적

(작성기간 : 2012년~2013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사업성과

나. 우수한 사항(표창, 공모사업 수상 등)

(대상기간 : 2010년~2013년)

연월일	내용	시행기관	비고
2010. 2. 24	표창내용 간략 기재	국무총리	

※첨부 : 표창장 등 관련 서류 첨부

다.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대상기간 : 2010년~2013년)

연월일	수감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행기관

라. 기타사항

10. 재산현황

가. 연간소득 : 천원 (법인,단체만 해당)

세입		세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계	

나. 부동산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	평가액	부채 재산적용액
계						

※ 재산적용액 : 본인 명의분 100%, 배우자 명의분 50%를 적용하여 기재

※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원 등 금액 확인이 가능 서류 첨부

다. 동산 현황

(단위 : 원)

동산 형태	금액	소유자	관계	재산적용액
계				

※ 재산적용액 : 본인 명의분 100%, 배우자 명의분 50%를 적용하여 기재

공고전일 기준 예금 잔액증명 및 부채증명 확인

라. 부채 현황

(단위 : 원)

차입기관명	금 액	담보종류	비 고

※ 부채증명서 등 서류 첨부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11. 원장(내정자)의 보육업무 종사 경력(평가인증 참여여부 포함)

구분	경력	종사기간	어린이집명	유형	직	평가인증 참여여부	소재지
총계	×× 년 ×월						
경 력 사 항	×년 ×월 □ ×년 ×월	~ . . . : □	○○어린이 집 □	가정 □	보육교사 □		울산 ○○구 □
		~ . . . : □	○○어린이 집	민간	원장		부산 ○○구

※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 참여하여 통과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첨부, 참여증일 경우 참여증인 증빙서류

공고 제 2013- 705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1. 제 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의 규정
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현황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제 지	정비 및 확인검사항목
제2013-1호	(주)세일공업사	임철성	북구 영포로 248-2	- 휘발유-LPG분야, 경유분야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공기과잉률, 배연
제2013-2호	(주)동신공업사	황종집	북구 영포로 272	- 휘발유-LPG분야, 경유분야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공기과잉률, 배연
제2013-3호	현대자동차(주) 울산서미스센 터	대표이사	북구 영포로 317	- 휘발유-LPG분야, 경유분야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공기과잉률, 배연

5. 등록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75)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3 - 712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중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중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
- 개정대상 분장사무: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 조정 사유: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과로, '문화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별도 분장사무 조정 없음)로 각각 세분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나. 주민참여과 분장사무중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신설대상 분장사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주민센터)
 - 조정 사유: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중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참여과에 신설

다. 안전건설과 분장사무 신설

○ 신설대상 분장사무

-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예 관한 사항
-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정 사유: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8.1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기획홍보실장, 전화:052-241-7102, 팩스: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의 부서명 및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별표]

구분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참여과	1.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리더 발굴,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4.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여론 및 동향관리 10.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11.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1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6. 친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7. 기관단체 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주민조례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19.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21.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22.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5.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26. 동사무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7. 동·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28. 동 예산 운영 및 동행정 업무 종합조정(동시달 문서통제 등)에 관한 사항 29.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30.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32. 새마을소득특별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33.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4.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조직 신설 육성 35. 마을기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37. 평생학습 정책연구와 주민요구 조사 38. 국내외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39.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40.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관리 41.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수사업 등 시책 추진 42.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특화사업 개발 운영 43. 연도별 사업 평가(성과집, 영상물 제작 등) 44. 평생학습 축제운영과 참가 45.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46. 평생학습 주민교육(교양, 전문교육) 사업 추진 47. 평생교육센터 관리와 운영지원 48.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관리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참여과	49. 평생학습 강사 은행제 운영 50. 그 밖에 평생학습프로그램(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1. 추억의 학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2. 해병대 전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53.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5.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6.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8.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주민센터)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4. < 삭제 > 5.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발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문화관련 사회단체 지원·행사에 관한 사항 8. 지역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1. 지방 민속자료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용품의 생산권장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 진흥대회 개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문화예술 및 건전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6.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9.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 매장문화재 지표,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22.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등) 사업계획 승인·등록 및 지도감독 24.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및 보고 25. 관광(단)지, 관광특구 신청에 관한 사항 26.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2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마케팅 강화 28. 직장체육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신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1. 운동장 조성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2.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3.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4.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5.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6. 운동장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37. 운동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9. 회관대관 업무에 관한 사항 40. 전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1.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42.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건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종사자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9. 건설사업용지의 매수, 수용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10. 건설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11. 소유사실확인원 및 보상사실관계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3.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6.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8.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9.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0. 20미터 미만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21. 20미터 미만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 교량 설계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24. 공공시설공사의 전기관련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25.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6.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0.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1.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4.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6.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7. 하수종말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8. 하수 수질감사에 관한 사항 39. 지방2급하천에 관한 허가 사항 40. 공공하수도 비용에 관한 사항 41.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43. 지하수 개발,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4.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감사에 관한 사항 45.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건설과	46.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7.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8.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49. 방재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0.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1.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2. 수방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3. 재해발생시 경계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4.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55. 수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6.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57. 구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8.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9.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0.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61.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2. 교량·터널·지하도·지하철 등 공공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3. 도시가스·항만·화학물질·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협의) 64.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공공기관·지하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65.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66.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사무(통계, 현황보고, 행정안전부와와의 청구역할 등) 68.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69.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신·구 별표 대비표

【주민참여과】

현 행	개 정 안
1~57. (생략)	1~57. (현행과 같음) 58.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주민센터) <신설>

【문화체육과】

현 행	개 정 안
1~2. (생략) 3.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43.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4~43. (현행과 같음)

【건설방재과】

【안전건설과】

현 행	개 정 안
1~67. (생략)	1~67. (현행과 같음) 68.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예 관한 사항 <신설> 69.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